

2017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(1차)

기업의 공통지재권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2. 28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목적

- 해외 진출(준비) 우리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

2. 신청 기간 및 대상

- 가. 신청 기간 : '17. 2. 28(화) ~ 3. 20(월), 21일간
- *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
- 나. 신청 대상 : 해외 진출(준비) 중소기업·중견·대기업 중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(단, 중소기업·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이상 포함) 또는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단체
- * 대기업 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
 - *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
 - *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

- 다. 신청 방법
- 협의체(업종단체)는 컨설팅 수행 요건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 후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(ip_care@koipa.re.kr) 또는 우편으로 접수
 - *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지원분야와 관계없이 기업 당 연간 1회만 지원
 -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추진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, 수행인력 등록신청서(별지 제2-1호 서식)를 제출

※ 수행기관 자격 요건

1. 공동대응 컨설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

2. 공동대응 컨설팅 수행을 위해 인력과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

3. 공동대응 컨설팅 수행을 위한 인력은 이공계 기술분야, 지재권 분야를 전공한 인력에 한하며 비정규직, 파견직을 제외한 정식 고용계약 인력이 8명 이상 일 것

4. 문헌 및 정보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·직원,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

* 수행기관은 1년에 최대 5건을 초과하여 공동대응 컨설팅을 수행할 수 없음

3. 지원유형 및 기업부담금

- (지원유형) 분쟁현안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지원
- < 유형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>
- | 현안유형 | 세부 지원내용 | 지원 한도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
| ① 권리공통분석 및 전략도출 | 가. 라이선스 공통협상 대응
나. 특허피물 문제특허 대응
다. 경쟁사 문제특허 대응 | 최대 2,000만원 이내 |
| ② 공동 피소대응 | 가. 특허보증(IPR) 공동대응
나. 경고장 공동대응
다. 피소 공동대응 | 최대 2,500만원 이내 |
| ③ 공동 권리행사 | 가. 문제특허 공동 법적대응(공동무효심판청구)
나. 상표브로커 피해 공동대응
* 공동이의신청, 공동무효심판청구
다.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
* 판매자 공동경고장 발송, 공동 민사소송(손해배상) 등
라. 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
* 공동 침해 조사·행정단속 | 최대 4,000만원 이내 |
- * 단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상기 열거된 현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재권 현안의 제안 시 시급성 및 지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
 - (기업부담금)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%를 현물(인력투입비용) 부담하되, 참여기업별 부담내역을 주관기관에 제출

4. 심사 및 결과 통지

- 가. 서류(선정) 심사 및 결과 통지
- ① 신청서 및 첨부 서류만으로 평가하여 우선지원 대상 결정
 - * 80점 이상 협의체 중 고득점 순 선정, 동점자 발생시 '공동대응 필요성' 항목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대상자 선정
 - ② 서류심사 결과 통지 : 3. 23 ~ 27 예정
- 나. 발표심사 및 지원결정 결과 통지
- ① 컨설팅 계획 적절성 등에 대한 수행기관 발표평가(PPT)
 - * 발표일정 및 평가 주요내용은 서류심사 결과통지 시 별도 안내
 - ② 협의체 선정 결과 통지 : 4월초

5. 지원절차

신청서 접수 (2.28 ~ 3.20)(3주)	이메일(ip_care@koipa.re.kr)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제출
추진계획서 등 접수 (3.14 ~ 3.20)(1주)	전문기관의 추진계획서 제출 및 신청서, 서류 보완
서류심사 및 결과 통지 (3.23 ~ 3.27)	서류(협의체 선정)심사(1차) 및 결과통지
발표심사 및 지원결정 통지 (4월 초)	발표심사(2차) 및 지원결정 통지
협의체 컨설팅 수행 계약 (4월 중)	협의체 참여기업-수행기관-보호원 3자간 계약 체결
공동대응 협의체 컨설팅 진행 (계약일로부터 3개월)	▶ 서면보고, 중간보고회, 최종보고회 등 ▶ 내·외부 전문위원을 통한 과제수행 점검 및 수행전략 도출
정부지원금 지급	▶ 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▶ 과제평가 후 과제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

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본 사업공고는 공모과제에 한정하며, 지정과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기업 협의체 구성 후 연중 수시로 수행기관 모집(공개경쟁) 예정

6. 사업 문의

- 문의처 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
- 전 화 : (02) 2183-5895, 8
- E-mail : ip_care@koipa.re.kr
- 주 소 : (06133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: www.koipa.re.kr

[별지 제1호 서식]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 양식
[별지 제2호 서식]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추진계획서
[별지 제3호 서식]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 보유 확인서